

의안번호	2217286
의 퇴 인	이언주의원
회 답 일	2026. 4. 7.
추계번호	26B1308
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(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)	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<u><신 설> 5.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</u>	의무규정
2	안 제15조의2(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) 신설	국가는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(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)	•미대상 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‘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’을 포함하더라도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하다는 의견임 － 참고로, 현재 제7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(‘27~’31)이 수립 예정으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에 제7차 계획 수립을 위하여 ‘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성과와 정책환경변화 분석’ 용역(사업비 5,000만원)을 실시하였음
2	안 제15조의2(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) 신설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(안 제15조의2)

- 개정안은 국가가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,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 중으로 개정안에 따라 사업 규모 등이 확대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사업 확대 여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며, 원자력 기술인력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,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[표 1] 원자력 기술인력 양성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 내용	예산('26)
원자력연구 기반확충 (미래 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양성)	- (목적) 원자력 주요 선진국과 과학기술 인프라 및 연구 노하우 공유를 통한 연구인력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핵심인재 양성 - (주요내용) · 원자력 전공생 대상 해외연구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· 국내에서 학위과정 중인 대학(원)생 대상 해외 우수 과학자(교수 또는 연구원)를 국내 대학에 초청해 글로벌 교육 제공 · 글로벌 멘토링, 원자력 창업 아카데미, 원자력 미래기술 아이디어 캠프 등 개최	3,550
과학기술 혁신인재양성 (차세대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)	- (목적) 차세대 원자력 및 융·복합 분야 민간수요기반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- (주요내용) 국내 대학(원)에 차세대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 설립을 통한 원자력 융합분야 전공과목 개설 확대, 산학연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및 융복합연구 프로젝트 수행	4,200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